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문화재보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매장문화유산이 아닌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,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,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704호, 2023. 9. 14. 공포, 2024. 9. 15. 시행 및 법률 제20077호, 2024. 1. 23. 공포, 2024. 7. 24. 시행 및 법률 제20286호, 2024. 2. 13. 공포, 2024. 8. 14. 시행)되었음.

이에 따라,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발견신고 관련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,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며,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 사항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한편,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를 ‘1945년 이전에 제작’된 것으로 축소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와 늘어나는 전시 수요

에 대응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신설(안 제21조의5 신설)

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에 대한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여부 처리기간에 공휴일·토요일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거쳐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않기로 함.

나.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절차 및 소유권 입증방법 신설(안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신설)

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발견한 경우 경찰서장 등 기관에 신고하고, 신고를 받은 기관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견사실을 통보하는 한편, 건조물 소유자·점유자는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된 건조물의 연혁과 관련된 자료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.

다.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축소(안 별표3 개정)

일반동산문화유산의 미술·전적·생활기술 분야의 공통기준 중 ‘제작연대’의 기준을 ‘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’으로 하도록 함.

라.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(안 별표3의2 개정)

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및 지원받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을 한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5,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5(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) 법 제35조제4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

1. 공휴일·토요일
2.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거쳐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
3.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받은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(보완 요구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보완서류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)
4.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(조사실시 사실과 기간이 문서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한다)
5.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결과 추가조사 등으로 안건을 보완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된 경우 재심의를 소요되는 기간(해

당 재심의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그 다음 개최되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)

제38조의3(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)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.

1.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
2.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

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제38조의4(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권 입증방법) ① 법 제61조의2제1항의 건조물 소유자·점유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유권을 입증하

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1.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된 건조물의 연혁과 관련된 자료
2. 일반동산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진, 도면, 사료 등의 자료
3.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지역 토지등기부, 토지사정부 등 소유권을 입증할 자료
4. 그 밖에 건조물의 계속적 소유 또는 점유를 증명할 자료

② 제1항의 건조물 소유자·점유자가 같은 항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,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 같은 법 제61조의2제3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별표 3 제1호가목의 공통기준 3)의 세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

별표 3 제2호가목의 공통기준 3)의 세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

별표 3 제3호가목의 공통기준 3)의 세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

별표 3의2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
		1차 위반	2차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80조의5제2항 제1호	지정취소	
나. 제41조의5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	법 제80조의5제2항 제2호	지정취소	

다. 제41조의5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	시정권고	지정취소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	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	시정권고	지정취소
마.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하여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	법 제80조의5제2항제3호	지정취소	
바.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마목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	법 제80조의5제2항제3호	시정권고	지정취소
사.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	법 제80조의5제2항제4호	시정권고	지정취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21조의5의 개정규정: 2024년 7월 24일
2. 별표 3의2 제2호의 개정규정: 2024년 8월 14일
3.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의 개정규정: 2024년 9월 15일

제2조(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21조의5(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) 법 제35조제4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</u> <u>1. 공휴일 · 토요일</u> <u>2.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을 거쳐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</u> <u>3.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받은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(보완 요구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보완서류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)</u> <u>4.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(조사실</u>		

<신 설>

시 사실과 기간이 문서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한다)

5.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결과 추가조사 등으로 안건을 보완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된 경우 재심에 소요되는 기간(해당 재심의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개최되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)

제38조의3(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)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는 일반동산 문화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.

1.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

<신 설>

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
특별자치도지사

2.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
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
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

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
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
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
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
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
다.

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
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
·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
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
한다.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
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제
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
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제38조의4(일반동산문화유산의
소유권 입증방법) ① 법 제61조
의2제1항의 건조물 소유자·점
유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
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
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1.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된

	<u>건조물의 연혁과 관련된 자료</u> 2. <u>일반동산문화유산과 관련된</u> <u>사진, 도면, 사료 등의 자료</u> 3. <u>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지역</u> <u>토지등기부, 토지사정부 등 소</u> <u>유권을 입증할 자료</u> 4. <u>그 밖에 건조물의 계속적 소</u> <u>유 또는 점유를 증명할 자료</u> ② <u>제1항의 건조물 소유자·점</u> <u>유자가 같은 항의 자료를 제출</u> <u>할 경우,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</u> <u>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</u> <u>회에 같은 법 제61조의2제3항의</u> <u>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</u> <u>할 수 있다.</u>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	
연 락 처	(042) 481 - 4789